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 요금 및 할인제도를 개선하고 캠핑장 사용시간 및 구미캠핑장 사용수칙을 변경하여 쾌적한 레저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캠핑장 사용료 반환 기준 추가(안 제8조)
- 나. 캠핑장 시설의 예약 기준 변경(안 제9조)
- 다.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변경(안 별표 1)
- 라.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율 변경(안 별표 2)
- 마.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변경(안 별표 3)
- 바. 구미캠핑장 사용수칙 변경(안 별표 5)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및 붕괴 등)”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3개까지이며”를 “1개까지이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사용예정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 칭	크 기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 라 반	8m×12m (최대6인)	1동/1일	90,000	120,000	160,000	전기사용료 포 함
오토캠핑	9m×9m (최대8인)	1면/1일	20,000	20,000	30,000	
일반캠핑	4m×5m (최대6인)	1면/1일	15,000	15,000	20,000	
평 상	3m×3m (최대8인)	1개소/1일	10,000	10,000	15,000	전기사용 불가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샤워장 (8인실/6동)	07:00 ~ 11:00 14:00 ~ 22:00	1,000원	1인/1회기준 (7세이하 1회무료)
바비큐그릴	1개/1일	10,000원	20개 보유

□ 주차장 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카라반 오토캠핑, 일반캠핑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무료	1대/1회 (그외 차량은 외부주차)
평상	당일 11:00 ~ 당일 20:00	무료	1대/1회 (그외 차량은 외부주차)

※ 주중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함)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사용시간(1일)

- 카라반, 오토캠핑, 일반캠핑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 평상 : 당일 11:00 ~ 당일 20:00

※ 퇴실시간 초과 시 (예약자가 있거나 평상 사용은 연장불가)

- 오토캠핑·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사용료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중	주말	
1. 구미시민	20%	20%	20%	카라반, 일반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2.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50%	20%	일반오토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3. 장애인	—	50%		
4. 국가보훈대상자	—	50%		
5. 기타	—	50%		
※ 비 고				
가.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나.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라.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사.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 체	유 형		
사용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화산·지진·태풍 예비 특보 이상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자동 취소되며 자동 취소 시 환불불가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5]

구미캠핑장 사용수칙(제10조 관련)

캠핑장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사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합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온라인을 통한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전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개수대에서만 음식물 및 식기 등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4. 자 동 차

- 차량의 출입은 가능한 22:00부터 07:00까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 시 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위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캠핑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사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생

- 개인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공용비품을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7. 수목보호

- 사용자는 수목주변에서 가스나 석유연료 등 화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수목을 훼손 할 경우 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8. 애완동물

- 모든 애완동물은 출입을 금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사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흡연은 불가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화기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0. 홍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비품 망실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공급 차단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사용제한(1kW/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4. 휴대물품의 제한

-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휴대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 ----- ----- -----.
1. <u>천재지변</u> 및 그 밖의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를 반환한다.	1. <u>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및 붕괴 등)</u>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의 예약) ① ~ ③ (생 략)	제9조(시설의 예약)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최대 예약가능한 캠핑장 시 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 분 없이 1일 <u>3개까지이며</u> , 연속 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 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 시에서 주관 · 주최 또는 후원하 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 로 한다.	④ ----- ----- ----- <u>1개까지이며</u> ----- -----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귀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생략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소 관 부 서		하 천 과
입 안 자	과 장	정 태 홍
	담 당	강 민 구
	담 당 자	김 민 섭 (480-5382)